

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4. 6. 29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□ 2004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-----	308,312천원
○ 일반회계 -----	308,312천원
· 소송배상금 -----	70,562천원
· 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 -----	92,940천원
· 주민등록대사 일시사역인부임 -----	82,566천원
· 감천중앙부두앞 도로복구, 해안가맞나동강모래톱 제방변 해양쓰레기 수거 -----	62,244천원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

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

1. 근 거 :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

2. 예비비 지출 내역

○ 총 괄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예산액(㉠)	지출결정액(㉡)	잔액(㉢-㉡)	비 고
일반회계	1,707,626	308,312	1,399,314	

○ 지출내역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	지출 일자	사 유
계	308,312	211,055	-	97,257		
소송배상금	5,000	5,000	-	-	04.03.22	여성회관 관련 소송 패소 배상금
	43,562	43,562	-	-	04.04.30	사하FR센터 관련 소송 패소 배상금
	22,000	22,000	-	-	04.09.06	감천항배후도로 관련 소송 패소배상금
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	92,940	75,114	-	17,826	04.07.29 ~11.04	구의회의원 보궐선거 경비
주민등록대사 일시사역인부임	82,566	50,593	-	31,973	04.11.9 ~11.31	주민등록표 수기폐지에 따른 주민등록 대사 인부임
감천중앙부두앞 도로 복구, 해안가및낙동강 모래톱 제방변 해양 쓰레기 수거	62,244	14,786	-	47,458	04.11.17	태풍"매기" 피해복구 경비